의 안 번 호

2110

[울신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/1정조례안]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5. 31.(수),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3. 5. 31.(수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3. 6. 9.(금)

2. 제안설명 요지(기획예산실장 김영환)

가. 제안이유

○ 중부도서관 건립과 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신규 부서신설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계 신설, 기능쇠퇴 분야 인력의 적극 발굴로 신규 수요 분야에 재배치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조례 내용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O 부서신설
 - 1) 실 신설: 홍보실(안 제5조의2)
 - 가) 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·보좌기관 설치(안 제4조)
 - 2) 단 신설: 도서관추진단(안 제6조)
- O 분장사무 조정
 - 1) 기획예산실(안 제5조)
 - 가) 정책 및 공모사업 등에 관한 사항 (정책사업단→기획예산실)
 - 나) 감사,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등에 관한 사항 (자치행정과 → 기획예산실)
 - 2) 홍보실(안 제5조의2)

- 가) 홍보행정의 계획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(기획예산실 → 홍보실)
- 나) 뉴미디어 활용 콘텐츠 개발 등에 관한 사항(신설)
- 다) 지역정보화 및 전산업무 등에 관한 사항 (총무과 → 홍보실)
- 3) 미래전략국(안 제6조제2항제5호)
 - 가) 도서관 건립 및 운영·관리 등에 관한 사항(신설)
- 4) 행정지원국(안 제7조제2항제1호~2호)
 - 가) 인사, 노사복지 등에 관한 사항 (인사: 명칭변경, 노사복지: 신설)
 - 나) 생활민원 등에 관한 사항(신설)
- 5) 복지환경국(안 제8조제2항제3호)
 - 가) 여성청소년 등에 관한 사항(통합)

다. 근거법규

- ○「지방자치법」제125조
- ○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신옥범)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중부도서관 건립과 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신 규 부서신설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계 신설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 하는 것으로
- O 도서관 추진단, 홍보실 신설과 분장사무 조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 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 거 법 규

지방자치법

- 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다.

지방자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- 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 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- 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- 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할수 있다.
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